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공고 (국내입찰)

< 공 지 사 항 >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견적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견적제출참가 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장기계속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둘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한국공항공사 입찰·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계약담당자(견적제출,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 사업담당자(공사시방서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건축시설부 장우영(☎051-974-3324)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고명 : 김해공항 국제선 항공사 발권부스 이전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약입찰방법 : 견적제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 42,7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불입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른 신청서류를 e-mail(bsm1121@airport.c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제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건축시설부 장우영(☎051-974-332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8/2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7 10:00
- 개찰일시 : 2026/08/27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견적제출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이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찰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의 제출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을 등록한 자(**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 '여성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안전보건 계획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을 위해서는 전자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횡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 하며, 동일가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거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한국공항공사 본·지사 전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수의계약 배제업체 공고 목록에 업체정보가 게시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	-	-	-	820,143	1,400,000	-	2,220,143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 이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불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불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견적제출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3억 미만인 건설공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견적제출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4) 이 견적제출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제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견적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해공항 건축시설부 부장 (☎ 051-974-335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건축시설부 장우영(☎051-974-3324)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 붙임
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4.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6.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양식) 1부.

2026. 8. 21.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협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